

#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 보고

의안 번호	4372
----------	------

2025. 12. 04.  
총무위원회

## 1. 심사 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: 2025. 11. 10. 박문섭 의원
- 나. 회부 일자: 2025. 11. 10. 회부
- 다. 상정 일자: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(2025. 12. 04.) 상정,  
“원안의결”

## 2. 제안 요지

### 가. 제안 이유

-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, 시와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 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(안 제3조~제4조)
-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계획의 수립(안 제5조~제6조)
- 우선구매 대상물품 지정 및 의무(안 제7조~제8조)
- 구매실적 점검·개선요구 및 실적 공개(안 제9조~제10조)
-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협조 요청(안 제11조~제12조)
- 평가 및 포상, 시행규칙(안 제13조~제14조)

### 3. 검토 의견

- 이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 근거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,
- 본칙 총 1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본칙에는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, 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(안 제3조~제4조),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계획의 수립(안 제5조~제6조), 우선구매 대상물 품 지정 및 의무(안 제7조~제8조), 구매실적 점검·개선요구 및 실적 공개(안 제9조~제10조),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및 협조 요청(안 제11조~제12조), 평가 및 포상(제13조), 시행규칙(제14조)을, 부칙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음.
-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실질적 구매 증진 및 지역 중증장애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 법령이나 다른 조례와 비교해 보았을 때, 내용이나 조문 체계, 형식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회의록 참조.

5. 심사 결과: 원안의결(출석위원 5명-박문섭의원 회피)

6. 소수의견의 요지: 해당 없음.

붙임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

## (제정안)

# 광양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중증장애인생산품”이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.
2. “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”(이하 “생산시설”이라 한다)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.

**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**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관하여 법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광양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우선구매 대상기관)**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(이하 “대상기관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광양시 본청, 직속기관 및 사업소, 읍·면·동
2. 광양시의회
3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광양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
4. 「광양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」에 따라 출자·출연한 기관

**제6조(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)** ① 시장은 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(이하 “촉진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1. 구매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
2. 중증장애인생산품 품목별 구매 목표액
3.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대상기관별 총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, 공사는 제외한다)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.

③ 시장은 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우선구매 대상물품 지정 등)** 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대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생산시설로부터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.

**제8조(우선구매 의무)** ① 대상기관은 생산시설로부터 물품 구매 요청을 받은 경우 가격, 품질,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.

②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.

③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,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 해당 계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**제9조(구매실적 점검 및 개선요구)** ① 시장은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촉진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10조(구매실적의 공개)**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매년 시 누리집 등에 공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우수기관을 별도로 공표할 수 있다.

**제11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** ① 시장은 관내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

개발, 산·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·판매 촉진을 위하여 전시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우선구매 협조 요청)**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종교시설, 학교, 체육시설, 기관, 단체 및 기업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13조(평가 및 포상)** ① 시장은 대상기관, 보조금 지원단체 및 업무수탁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·단체·개인 및 공무원에 대하여 「광양시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 이 경우 포상 사유 및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